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092 제출연월일 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25조제3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"을 "저소득층"으로, "보건복지부령으로"를 "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(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	제25조(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		
원) ①・② (생 략)	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	③		
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			
는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</u>	<u>저소득층</u>		
<u>층</u>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			
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			
의 범위에서 <u>보건복지부령으로</u>	보건복지부령 또		
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	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		
다.			